

연결재무제표 유용성과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박상봉* · 윤말순**

〈목 차〉

I. 연구목적	V. 분석 및 해석
II.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과 한계점	VI. 결론
III.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배경	참고문헌
IV. 연결재무제표의 분석	Abstract

I. 연구목적

우리나라 연결회계제도는 1974년 7월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과 1975년 4월에 재무부령으로 공포된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에 따라, 197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상장기업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첨부·공시 및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고, 연결재무제표를 첨부·공시하여야 할 회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보고서의 본문이나 주석에 단순히 특기사항으로 기재만 하면 공시의무가 면책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았다.

1992년 4월 28일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속회사가 있는 상장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

* 동의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 동의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강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상장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및 외부감사가 1993년 6월 결산부터 의무화하였다. 또한 1994년 4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인 7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다.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주식보유관계에 있는 기업(그룹)들의 손익을 통산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등 현재 2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를 법 조문 등 도입을 위한 실무검토를 하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에 버금가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2005년에 도입 될 것이라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말한다.¹⁾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부문에 있어서는 법인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5년 이내 5% 이하하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²⁾ 이와 같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재계와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우리나라에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면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지주회사제도를 세계 면에서 뒷받침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이 경영전략상 분사화 또는 사업부제 중 어느 하나의 사업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취지가 조세의 중립성 확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화 등에 있다.

II.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과 한계점

현행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연결기준은 「회사간 지분율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하는 지분율기준을 주로 하고 실질지배력기준을 일부 가미하고 있다³⁾(<그림 1>). 실제 우리 기업의 소유구조는 「개인중심」

1) 머니투데이(경제신문) 2003년 11월 27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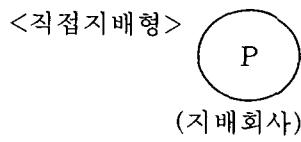
2) 전국경제인연합회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46개 과제 내용 중' 2004년 4월 20일

3) 「연결재무제표 준칙」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결재무제표상 지배·종속관계를 판정하는 지배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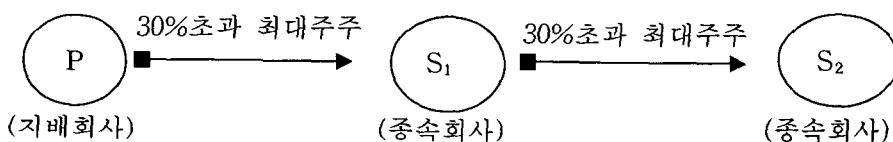
- ①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 ②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실질지배력기준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임)
- ③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30%를 초과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단,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회사

으로 실질소유경영자가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서 동일계열에 속한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계열회사라도 회사간 지분율기준으로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연결에서 제외되는 회사가 상당수 발생한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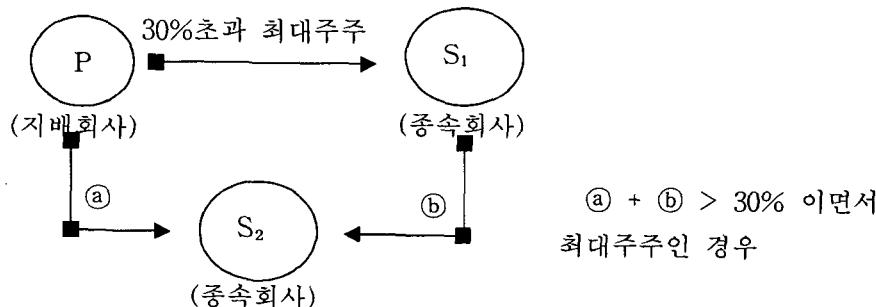
<그림 1> 연결대상의 범위



<간접지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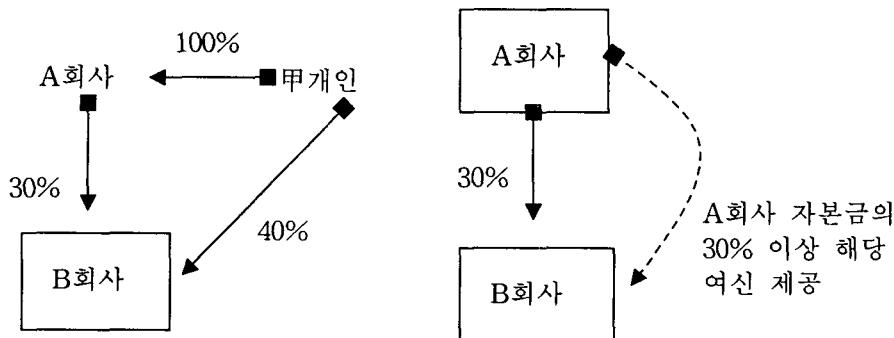
<합동지배형>



외국에서와 같이 지주회사가 허용되는 경우 절대적 지배회사가 존재하여 하나의 계열기업군에 대해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만으로 경영성과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과거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제8조)하고 있기에 계열기업군내 절대적 지배회사가 존재하기 힘들어 하나의 계열기업군에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그림 2>에서 같이 한계점이 있다.

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최상위 지배회사가 다음에 속하는 경우에는 차상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그림 2>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현행 연결재무제표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별재무제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연결실체 전체의 재무적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내부거래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을 제거함으로써 연결실체 내부의 거래로 인한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셋째, 특정 연결실체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대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등⁴⁾ 많은 유용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⁵⁾.

첫째,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이므로 종속회사의 이해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며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기본적으로 지배회사이론을 따르고 있으며 지배회사의 입장에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연결시키는 것이기에 종속회사 재무제표상에서는 내부거래의 제거와 외부주주지분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종속회사의 올바른 경영성과와 재무구조는 연결재무제표를 가지고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에 비하여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전문적 회계지식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일반 이해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기가 곤란하다. 특히 외부주주지분의 계산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기에 일반 투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이익잉여금 등의 수치는 배당가능이익을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회계 환경상 별 의미가

4) 김영덕, 고급회계, 세학사, 2004, p.95

5) 김정국, 유인금, 「결합 및 연결회계제도 연구」(서울: 한국증권연구원, 1998), pp.49~50.

없으며 주주들이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는 데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이고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의 산출도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재무제표 중심으로 산출되는 회계판행 때문이다.셋째,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 투자자등 이해관계자의 기업가치평가 및 부도·파산여부 판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특히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증권업 등을 공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의 실효성을 감퇴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과거에 한보, 우성, 삼미그룹의 부도와 같은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이들 기업집단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계열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호지급보증과 담보제공 등으로 공동운명체화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열기업군 전체의 재무상태, 차입금현황 및 경영성과 등을 현행연결재무제표로는 파악할 수 없었다는 데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넷째, 여신관리에 연결재무제표가 유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여신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금융기관이 여신공여시에 계열기업 내 여타 관련기업들에 관한 정보부족 및 사실상 단일 경제적 실체인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없어 실질적인 여신심사가 곤란하며 여신기관 부실대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III.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연결납세제도는 종속회사와 지배회사간의 하나의 법인으로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한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면서부터였다.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주회사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분사화 형태가 사 사업부제 형태에 비해 세제상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경영전략상 부사화 또는 사업부제 중 어느 하나의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제는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 제도를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제는 정부가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의 초창기와는 달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재계와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와 비판점을 살펴본다.

1. 연결납세제도의 효과

1.1 세제의 중립성 유지

세제는 과세 목적 이외에 기업활동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업이 어떤 조직을 택할 것인지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납세자인 기업 입장에서 연결납세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 조직의 형태가 납세의 유·불리를 좌우하지 않아 기업조직 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단일기업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지주회사로 묶인 기업군으로 경영하는 경우 납세액의 차이가 없다면, 납세자인 기업은 기업활동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현행 조세법 하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므로 분사화 이전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고 궁극적인 방안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대두되었다.

1.2 과세의 공평성

과세의 공평성문제는 앞서 언급한 세제의 중립성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은 수직적인 부분과 수평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수평적 공평성이란 동일한 부담력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경제적인 실질 소득이 동일한 법인이라면 기업의 형태가 단일기업이냐 지주회사냐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3 투명성 확보

연결납세제도는 관계회사간의 불필요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도 조세의 부담이 낮아져 기업의 투명성 증대에도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현행

납세제도하에서도 내부거래를 통해 이미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거래로 인해 기업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설정이다. 연결납세를 하는 경우 관계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된 이익과 손실은 상계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부거래로 인한 기업의 불투명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1.4 연결회계제도의 정착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재벌이라는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지배회사가 없고, 지배 종속 관계가 확실치 않으며 실질소유 경영자가 중심에 있지만 그도 지배권을 행사할 만큼의 충분한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통해 분산시키고 있는 설정이다. 이러한 독특한 환경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정착이 어려워 개별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 내 손익 상계라는 이점을 통해 연결납세제도가 연결회계제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1.5 세제의 선진화

현재 OECD 가입국 중 19개국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법인세수의 80%이상이 연결납세제도에 의해 신고납부되고 있다. 국제인 추세로 보아 각 나라들은 경제적 일치성과 세제의 중립성 등을 위해 손익 통산을 인정하는 등 자국 설정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1.6 내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외국 선진 기업들은 연결납세제도를 통하여 조직구조의 선택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연결납세 집단 내 기업간의 손익 통산으로 세부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내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2.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비판

2.1 세수의 감소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고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기업집단 내의 내부미실현이익이 제거되고 결손금이 이체되어 일반적으로 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2002년 4월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법인세 감소를 우려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에 부가적으로 2%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연결납세제도 적용 전이나 연결대상 가입 전에 발생한 결손금액에 대하여, 모회사 등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2 세무계산의 복잡성과 조세행정 비용의 증가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연결기업간 사업연도의 불일치,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세액배분, 감면액 배분 등에 관해 복잡한 계산 및 조정이 야기될 것이다. 또한 국가 입장에서도 조세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세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조세 행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를 집행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조세 행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2.3 구조조정의 지연

연결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결기업 구성 법인간의 손익 통산이 가능해짐으로써 대기업이 부실자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으므로 부실기업의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성이 크다

3. 선행연구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들은 연결납세가 적용될 경우 기업은 효익에 있어 약간의 상반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스코트(Scott, 1991)와 사미와 웰시(Sami and Welsh, 1992)는 연결회계를 조기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의 차이를 조사·연구하였는데, 두 집단 사이에 부채·기업규모 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모라와 리스(Mora and Rees, 1998)는 스페인 기업을 대상으로 연결회계제도를 조기 도입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재무적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기업규모, 이익률, 부채 등의 변화율이 조기도입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부채 증가율이 낮고 기업규모(총자산)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연결회계를 조기 도입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라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식(1997)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이론과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금 부담의 감소와 이미 다른 나라에서 표출된 논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처리하였다. 표본은 공정위에서 지정한 30대 기업집단을 선정하여 연결전후의 법인세를 산출하고 위의 가설들을 검정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개별과세제도에 비하여 조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섭(1999)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의 세금부담이 감소하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 기업집단 중 5대 기업집단을 표본으로 하여 연결그룹의 법인세를 산출하고 개별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와 연결법인인 경우에 부담하는 법인세를 비교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개별과세제도에 비하여 조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복수(1999)는 연결법인세제는 현행 개별법인세제에 비해 조세지원효과의 관점에서 기업의 조세부담 감소 여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상장협회에서 발간한 상장총람 등에서 표본을 얻어서 연결그룹의 법인세를 산출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개별과세제도에 비하여 조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연결법인세제는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에 유리한 세제라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는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한 점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광재(2001)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25개 기업집단에 속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 분석에서 연결법인세율이 개별법인세율보다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법인세부담이 감소하여 연결대상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자발적 공시유인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V. 연결재무제표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비판하는 주요한 요인이 법인세수입의 감소효과, 과세 공평성의 제고효과, 연결재무제표작성의 정착 등을 공시된 연결재무제표를 재무분석을 통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회사은 2002사업년도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가 있는 312사중 분석제외회사를 제외한 258사를 대상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있어 비판적인 관점인

조세수입과 재무비율의 문제점을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자료에 의하여 비교분석한다. 연결재무제표 분석제외회사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제외회사

구 분	업 체 명
① 감사의견거절	2003년 1사 (코리아데이터시스템스), 2002년 1사 (삼보 컴퓨터)
② 감사의견한정	2003년 7사(국동, 남성, 베네테스,
③ 연결감사보고서 미체출	삼도물산 1사
④ 지주회사	8사(세아홀딩스, LG, 한국컴퓨터지주, 풀무원, 농심홀딩스, 신한금융지주, 동원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⑤ 분할 및 합병	8사(농심, LG전자, F&F, 삼성출판사, 남해화학,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H&S, 하나은행
⑥ 당기 신규연결대상법인	15사(한일철강, 삼익LMS, 삼천리, 동일고무벨트, 녹십자상아, 한국전기초자, 퍼스텍, 상림, 웅진닷컴, 신풍제약, 서원, 한국포리울, 케이씨텍, 삼영, 사보이(전기데이터는 없음)
⑦ 결산기변경	3사(KEC, 전방, 삼양사)

1. 연도별 연결재무제표 실적 분석

2003년 연결후 순이익은 2002년 연결대비 감소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제조업은 증가, 금융업은 적자전환 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후 매출액은 547조1,425억 원으로 2002년 연결 대비 2.45% 증가, ② 연결후 영업이익은 42조1,600억 원으로 2002년 연결 대비 8.94% 감소, ③ 연결후 경상이익은 30조2,365억 원으로 2002년 연결 대비 14.44% 감소, ④ 연결후 당기순이익은 19조4,968억 원으로 2002년 연결 대비 15.25%감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2년에 비해 2003년도 재무결과인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하여 연결납세액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표 2> 연도별 연결재무제표 실적 분석

(단위 : 억원, %, %P)

구분	2002년연결	2003년연결	증감액	증감률
자산총계	6,369,199	6,276,905	-92,294	-1.45
자본총계	2,175,054	2,353,956	178,902	8.23
부채총계	4,194,145	3,922,949	-271,196	-6.47
부채비율	192.83	166.65		-26.18
매출액	5,340,524	5,471,425	130,901	2.45
영업이익	462,993	421,600	-41,393	-8.94
경상이익	353,388	302,365	-51,023	-14.44
당기순이익	230,048	194,968	-35,080	-15.25

2.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비교 분석

<표 3>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비교 분석

(단위 : 억원, %, %P)

구 분	2003년 개별	2003년 연결	증감액	증감률
자산총계	4,317,227	6,276,905	1,959,678	45.39
자본총계	2,176,533	2,353,956	177,423	8.15
부채총계	2,140,693	3,922,949	1,782,256	83.26
부채비율	98.35	166.65		68.30
매출액	4,044,599	5,471,425	1,426,826	35.28
영업이익	341,759	421,600	79,841	23.36
경상이익	275,571	302,365	26,794	9.72
당기순이익	200,958	194,968	-5,990	-2.98

2003년 개별회사실적 대비 2003년 연결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은 증가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으로는 개별재무제표보다 연결재무제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① 개별에서 연결후 매출액은 142조6,826억 원으로 개별에 대비 35.28%증가,
- ② 연결후 영업이익은 7조9,841억 원으로 개별에 대비 23.36% 증가, ③ 연결후

경상이익은 2조6,794억 원으로 개별에 대비 9.72% 증가, ④ 연결후 당기순이익은 -5,990억 원으로 개별에 대비 -2.98감소, 분석의 결과는 개별납세제도 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한 세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3.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주요그룹 연결실적 분석

<표 4> 주요 그룹 2002년도와 2003년도 연결실적 분석

(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연결	2003년연결	증감액	증감률
자산총계	3,438,869	3,310,124	-128,745	-3.74
자본총계	948,730	1,071,072	122,342	12.90
부채총계	2,490,139	2,239,052	-251,087	-10.08
부채비율	262.47	209.05		-53.42
매출액	2,782,619	2,732,801	-49,818	-1.79
영업이익	233,572	212,256	-21,316	-9.13
경상이익	182,322	178,861	-3,461	-1.90
당기순이익	122,637	130,221	7,585	6.18

* 공정위발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중 공기업을 제외한 13개 그룹⁶⁾을 대상

* LG그룹은 분할, 합병 등으로 제외

연결후 매출액은 273조2,801억 원으로 2002년연결 대비 1.79%감소하고 연결후 순이익은 13조 221억 원으로 2002년연결 대비 6.18% 증가를 했다. 연결후 매출액은 감소하고 순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2002년 연결대비 한화,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두산, 현대 등이 흑자전환하고 현대자동차, SK, 신세계, 대우건설 등을 순이익이 증가한 반면, 동부는 적자지속하고 한진, LG전선그룹 등의 순이익이 감소로 나타났다.

6) 삼성, 현대자동차, SK, 한진, 한화,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 대우건설, 신세계, LG전선

<표 5> 주요 그룹의 2003년도 연결전·후 실적분석

(단위 억원)

그룹명	매출액		증감률	순이익		증감률
	연결 전	연결 후		연결 전	연결 후	
삼성	700,064	988,844	41.3	67,452	67,580	0.2
현대자동차	466,231	732,867	50.7	33,008	32,824	-0.6
SK	126,303	157,265	24.5	19,901	20,160	1.3
한진	135,259	146,355	8.23	907	1,086	19.7
한화	37,539	221,303	489.3	2,263	1,358	-40.0
현대중공업	95,560	108,206	15.7	1,470	1,713	16.6
금호아시아나	30,050	91,841	205.6	416	95	-77.2
두산	51,439	90,957	76.8	467	481	2.9
동부	30,497	40,603	33.1	-17	-124	적자지속
현대	3,582	3,821	6.7	283	283	0.00
대우건설	42,311	42,605	0.7	1,637	1,653	1.0
신세계	58,038	64,809	11.7	3,014	3,020	0.2
LG전선	28,080	43,326	54.3	33	94	184.1
합계	1,822,953	2,732,801	49.9	130,835	130,221	-0.5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주요 13개 그룹은 연결 후 순이익은 13조221억원으로 연결전보다 0.5% 줄었으나, 매출액은 연결후 연결전보다 약 5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4. 2002년 연결 대비 2003년 연결 순이익 회사수 현황

구 분	흑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계
제조업	169	29	29	20	247
금융업	6	1	3	1	11
합계	175	30	32	21	258
비중	67.83	11.63	12.40	8.14	100

연결 대비 연결 순이익 회사수는 흑자전환의 업체수와 적자전환의 업체수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연결 후에 순이익 적자로 돌아선 기업은 동양메이저, STX, 태광산업, 금호석유화학, 코오롱건설, 경방, 대림통상 등이며, 연결에 따른 순이익 증가율은 한솔LCD가 390%(연결전 11억900만원 연결후 54억3500만원)로 가장 높았다.

IV. 결 론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1974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정」과 1975년 재무부령으로 공포된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해 1976년부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최초로 규정되었다. 1981년 12월에 연결관련 조항이 「기업회계기준」으로 통합되었으나 1985년 1월 「연결 재무제표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어 연결회계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고 1987년 4월에는 「연결재무제표」의 하부규정으로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준칙」이 제정되었다.

1992년 4월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토록 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게 된다. 199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결재무제표작성 및 외부감사의무화를 1994년12월 결산법인부터는 의무화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연결작성 및 지분법적용은 1995년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현재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외의 주식회사가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하여 작성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가 정착되었다 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한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현재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경제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세제의 흐름과 조화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우리세제가 세계적인 세제흐름에 뒤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시된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를 도입을 희피하는 최대의 이유인 법인세수감소는 분석결과 연결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은 더욱더 큰 변화를 갖는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20여 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금융감독원, 회계자료실(<http://fsc.go.kr>), 2004
2. 김권중 · 남상오(1994), “연결회계정책 정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18호.
3. 김정국, · 유인금(1998), “결합 및 연결회계제도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4. 김찬섭(2000),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구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5. 박성환(1995), “연결회계자료의 정보효과”, 경영학연구 제24권 제4호.
6. 이광재, “연결재무제표 공시 및 감사의무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회계학연구 제20권
7. 이만우 · 김양호 · 노준화(1996), “우리나라 연결회계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상장협연구보고서 96-1.
8. 임영인(2003), “기업의 재무정보 특성에 따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효과”, 박사학위 논문, 경기대 대학원.
9. 전성빈(1994),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의 정보효과”, 회계학연구 제19호.
10. 정규언 · 김정원(1994), “연결재무제표의 추가적인 정보가치에 관한 연구”, 경영학 연구 제23권 제3호.
11. Brown, S. and J. Warner(1980), “Measuring Security Price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 pp.205~258
12. Crestol, J., K. Hennessey and R. Yates(1998), *The Consolidated Tax Return: Principles · Practice · Planning*, Warren, Gorham & Lamont.
13. Hennessey, K. and R. Yates(1994), “Complex New Matching and Acceleration Rules Apply to Intercompany Transactions”, *The Journal of Taxation*, pp.80~87.
14. Hennessey, K. and R. Yates(1994), “Single-Entity Concepts Also Apply to Intercompany Stock, Obligations Under Prop. Regs”, *The Journal of Taxation*, pp.138~143.
15. Mora, A, and W. Rees(1998), “The Early Adoption of Consolidated Accounting in Spain”, *The European Accounting Review*.
16. Scott, T.(1991), “Pension Disclosure under SFAS No.87 : Theory and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8(Fall); Sami, H. and M.

- Welsh(1992), "Characteristics of Early and Late Adopters of Pension Accounting Standard SAFS No.87",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9(Fall).
17. Peel, F., W. Huber and D. Lubozynski(1993), "Consolidated Return Prop. Regs. Revamp Concepts for Basis Adjustments and E&I", *The Journal of Taxation*.
18. Peel, F., W. Huber and D. Lubozynski(1993), "Consolidated Return Prop. Regs. Revise Income Allocation and Excess Loss Account Rules", *The Journal of Taxation*.

Abstract

The Validity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Park, Sang-bong · Yun, Mal-sun

It was 1976 when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 was first prescribed in this nation. Since then, the prescription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Revised in April 1992,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provided that every listed corporation has it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an auditor's opinion about them attached to its business report. In other words, the outside audit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became inevitable. The Act of the Outside Audit of Corporation was revised in December 1993 to provide that all corporations must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receive the outside audit of the documents beginning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4. In case of overseas corporation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the Equity Law have been applied since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5. Now those sheets must be prepared by all local and overseas corporations that involve relations of governance or dependence. The prepar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has been settled as a system. This nation has not yet introduced consolidated tax return using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Such tax return system is already being used by most of the world's economic powers such as U.S., Europe and Japan. This study shows that reduction in corporation tax is the biggest reason for avoiding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even though the system can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consolidated accounting. Consolidated tax return,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about 20 countries including U.S., needs to be introduced by this nation whe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re publicly notified.

Key Word :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Consolidated Tax Return